

제 10 장 최종조항

제 10.1 조 투명성

1.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공포하거나,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법률·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 및 사법적 결정을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.

2.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, 요청이 있는 때에는, 제1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한다.

3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법집행을 방해하거나,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, 또는 경제적 행위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

4. 이 조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, 그 상충의 범위 안에서 후자가 우선한다.

제 10.2 조 부속서 및 부록

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.

제 10.3 조 개정

1. 제8.1조제7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,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에,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·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.

2.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3.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된다.

제 10.4 조

가 입

1.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경우,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.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.

2. 가입국에 대하여,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,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제 10.5 조

탈퇴 및 종료

1.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.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.

2.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,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.

3.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설립하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, 그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.

제 10.6 조

발 효

1. 이 협정은 비준·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.

2.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. 다만,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월 전에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.

3.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,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하나가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4.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, 이 협정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5.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,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은 기탁처에 통보된다.

제 10.7 조

기탁처

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5년 12월 15일,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.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.

대한민국을 대표하여

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

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

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

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